

제43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15:00 ~ 16: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7월 4일)
2. 장소 : 본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 원	성 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박언표, 김명혁, 서의택, 안진환, 윤성복, 최재훈, 하선규	
	감사 2명	정 일, 황성철	
불참 임원	이사 1명	강신혁	
	감사 0명		

4. 안건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규칙 개정의 건

- 교원인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사항

5. 회의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제43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접수하다.

가.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 제시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관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정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1】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정관 변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박언표
최재훈
김명혁
윤성복
서의택
안진환
하선규
황성철

나. 규칙 개정의 건

● 교원인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의장은 규칙 개정의 건으로 교원인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교원인사규칙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교원인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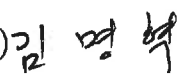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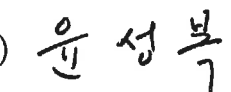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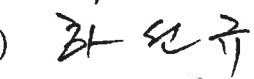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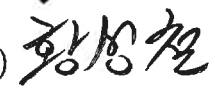
다. 기타사항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참석이사 상호간에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6. 폐회선언

안건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박언표	(서명)	
이 사	김명혁	(서명)	
이 사	서의택	(서명)	
이 사	안진환	(서명)	
이 사	윤성복	(서명)	
이 사	최재훈	(서명)	
이 사	하선규	(서명)	
감 사	정 일	(서명)	
감 사	황성철	(서명)	

【별첨 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임원 중 이사장 및 이사장 이 지정하는 1인의 이사는 상근이사 로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 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u>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3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육기관 의 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 며, 중학교의 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 의 장은 교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하며, 중학교의 장은 임기 중 정년에 달한 경우 교원의 정년까지를 임기로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대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② (좌 동) <u>③ 상근하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u>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u>② <삭 제></u>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3조 (임용) ①(좌 동) ②(좌 동)	• 상근이사의 보수지급방법 명시 • 보선임원의 임기 전임자의 잔임기간 명시 삭제

박영호
최지훈
김명혁
윤성복
김민
사우환
이진환
하선규
황상현

현행	개정	비고
학교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임용하되, 정년보장을 받고자 하는 교수의 경우에는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교 수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 교 수 6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 교 수 3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삭제) 5. (삭제)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된 교원 중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임용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계획 및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임용하고, 정년보장을 받고자 하는 교수의 경우에는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④ ~ ⑪ (좌동)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좌동)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강사 및 비전임 교원(겸임 및 초빙교원) 임용을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계획 및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백영호 최재홍 권명혁 윤성복 조기현 사익택 안진환 하인규 황성천 자구 수정 •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

현행	개정	비고
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주소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u>이사장이 지정하는 민간단체</u>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해당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좌 동) 7의2. (좌 동) 8. (좌 동) 9. (좌 동) 10. (좌 동) 11. (좌 동) 12. (좌 동) 13. (좌 동)	• 민간단체 삭제

박연호
최재훈
김병학
윤성복
~~조국~~
서의택
안진현
홍건국
홍성천

현행	개정	비고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삭제)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법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좌동)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③ (좌동)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봉급의 80퍼센트 2. 제4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삭제> 제48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19.01.8) 시행일 2019.1.8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만 지급하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중에는 30퍼센트를 지급함.) • 직위의 해제 대상자 면직은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위반으로 조항 삭제 • 사립학교법 개정 (2016.2.3.) [법률 제13938호] 시행일 2016.2.3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

박영표
시위태
안진환
최재호
김명혁
윤성복

현행	개정	비고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u>할 때에는</u>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u>사항</u> 2. 학교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u>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u>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u> 2. <u>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u> 3. <u>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u> 4. <u>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u> ②<u>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u>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좌 동)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u>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제외한</u>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u>할 때</u>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u>사항과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u> 2. (좌 동)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u>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u>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임용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19.03.19) 시행일 2019.3.19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박인환
사익택
이진환
홍민규
황성철
최재훈
김명혁
윤성보
민재

현행	개정	비고
<u><신설></u>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u>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4 절 사무직원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u>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u>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u>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u>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제 4 절 사무직원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u>다만, 중학교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u>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립학교법 개정 (2018.04.17) 시행일 2018.10.18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중학교 사무직원의 복무준용 규정 명시
<u><신설></u>	<u>부칙 (2019. 7. 16. 제436차 이사회 의결)</u> <u>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제52조의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u> <u>②(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u>	시행일

백영호
새의익
안진환
홍선국
황성천
최재호
김명혁
윤성복
조대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2)		(별표 2)		
대학교 직원 정원		대학교 직원 정원		
총 계	174명	총 계	174명	
일반 직 계 77명		일반 직 계 95명		※ 증 18명
2급	(참 여) 2명	2급	(참 여) 2명	
3급	(부 참 여) 4명	3급	(부 참 여) 4명	(증 5명)
4급	(참 사) 7명	4급	(참 사) 7명	(증 4명)
5급	(부 참 사) 12명	5급	(부 참 사) 17명	(증 5명)
6급	(주 사) 15명	6급	(주 사) 19명	(증 4명)
7급	(부 주 사) 14명	7급	(부 주 사) 19명	
8급	(서 기) 14명	8급	(서 기) 18명	
9급	(부 서 기) 9명	9급	(부 서 기) 9명	
기술 직 계 50명		기술 직 계 50명		
4급	(사서참사) 1명	4급	(사서참사) 1명	
5급	(사서부참사) 3명	5급	(사서부참사) 3명	
6급	(사 서) 4명	6급	(사 서) 4명	
7급	(부 사 서) 4명	7급	(부 사 서) 4명	
8급	(사서서기) 3명	8급	(사서서기) 3명	
9급	(사서부서기) 2명	9급	(사서부서기) 2명	
4급	(전 산 참 사) 1명	4급	(전 산 참 사) 1명	(증 1명)
5급	(전산부참사) 1명	5급	(전산부참사) 2명	(증 1명)
6급	(전 산 기 사) 2명	6급	(전 산 기 사) 3명	
7급	(전산부기사) 2명	7급	(전산부기사) 2명	
8급	(전 산 서 기) 3명	8급	(전 산 서 기) 2명	(감 1명)
9급	(전산부서기) 3명	9급	(전산부서기) 2명	(감 1명)
4급	(전기·전자참사) 1명	4급	(전기·전자참사) 1명	
5급	(전기·전자부참사) 2명	5급	(전기·전자부참사) 2명	
6급	(전기·전자기사) 2명	6급	(전기·전자기사) 2명	
7급	(전기·전자부기사) 2명	7급	(전기·전자부기사) 2명	
8급	(전기·전자서기) 2명	8급	(전기·전자서기) 2명	
9급	(전기·전자부서기) 2명	9급	(전기·전자부서기) 2명	
4급	(토목건축환경참사) 1명	4급	(토목건축환경참사) 1명	
5급	(토목건축환경부참사) 1명	5급	(토목건축환경부참사) 1명	
6급	(토목건축환경기사) 2명	6급	(토목건축환경기사) 2명	
7급	(토목건축환경부기사) 2명	7급	(토목건축환경부기사) 2명	
8급	(토목건축환경서기) 2명	8급	(토목건축환경서기) 2명	
9급	(토목건축환경부서기) 2명	9급	(토목건축환경부서기) 2명	
기능 직 계 37명		기능 직 계 19명		※ 감 18명
7급 계	2명	7급 계	2명	
8급 계	7명	8급 계	7명	
9급 계	28명	9급 계	10명	(감 18명)
고 용 직 10명		고 용 직 10명		

박영환
 서다익
 이진환
 김민규
 황성준
 최지호
 김영석
 윤성복

[별첨 2] 교원인사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 1 장 총칙 제2조의2(교원의 구분 등) ①대학교의 경우에는 <u>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u>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하며, 소속은 학과 또는 학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원,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비정년트랙 교원은 2년 내지 6년의 기간을 정해 계약으로 임용되고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을 말하며, 교육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고 임용에 관한 규칙은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u><신 설></u> ④비전임교원은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나 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분류되지 <u>않고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임용되는</u> 교원을 말하며,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기금교원 등이 있고 이에 적용하는 규정은 <u>이사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u> ⑤중학교의 경우에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이하 “중학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u>대학교원과 중학교원에게 적용한다.</u>	제 1 장 총칙 제2조의2(교원의 구분 등) ①대학교의 경우에는 <u>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u>으로 구분하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하며, 소속은 학과 또는 학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원,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④강사는 담당교과목에 관한 교육·지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⑤비전임교원은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나 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분류되지 <u>않는</u> 교원을 말하며,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기금교원 등을 말한다. ⑥중학교의 경우에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이하 “중학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u>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중학교원에게 적용하고,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이사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u>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강사 추가) ※ 강사 임용 관련 사항 신설 ※ 항 번호 변경 ※ 자구 수정 ※ 항 번호 변경 ※ 적용범위의 구체화 및 교원종류별 별도 규칙 명시

박영환
서기원
안진환
김민규
황상현
최지호
김명형
윤성복

현행	개정	비고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자격기준) ①대학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u>교수자격기준</u>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 1]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직위) ①대학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별표1] 교수의 자격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년) <table><tr><th rowspan="2">연구교육 직명</th><th colspan="3">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th><th colspan="3">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th></tr><tr><th>경력연수</th><th>연구실적 연 수</th><th>교육경력 연 수</th><th>계</th><th>연구실적 연 수</th><th>교육경력 연 수</th><th>계</th></tr><tr><td>교 수</td><td>4</td><td>6</td><td>10</td><td>5</td><td>8</td><td>13</td></tr><tr><td>부 교수</td><td>3</td><td>4</td><td>7</td><td>4</td><td>6</td><td>10</td></tr><tr><td>조 교수</td><td>2</td><td>2</td><td>4</td><td>3</td><td>4</td><td>7</td></tr></table> ※ 비 고 : <u>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u>	연구교육 직명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 교수	3	4	7	4	6	10	조 교수	2	2	4	3	4	7	②~③ (좌 동) 제4조(자격기준) ①대학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u>대학교원자격기준</u>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 1] ②~③ (좌 동) 제5조(직위) ①대학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u>강사</u>로 한다 ② (좌 동) <u>부 칙</u> <u>(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부터 시행하되,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u> [별표1] 교원의 자격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년) <table><tr><th rowspan="2">연구교육 직명</th><th colspan="3">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th><th colspan="3">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th></tr><tr><th>경력연수</th><th>연구실적 연 수</th><th>교육경력 연 수</th><th>계</th><th>연구실적 연 수</th><th>교육경력 연 수</th><th>계</th></tr><tr><td>교 수</td><td>4</td><td>6</td><td>10</td><td>5</td><td>8</td><td>13</td></tr><tr><td>부 교수</td><td>3</td><td>4</td><td>7</td><td>4</td><td>6</td><td>10</td></tr><tr><td>조 교수</td><td>2</td><td>2</td><td>4</td><td>3</td><td>4</td><td>7</td></tr><tr><td><u>강 사</u></td><td><u>1</u></td><td><u>1</u></td><td><u>2</u></td><td><u>1</u></td><td><u>2</u></td><td><u>3</u></td></tr></table> ※ 비 고 : <u>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u>	연구교육 직명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 교수	3	4	7	4	6	10	조 교수	2	2	4	3	4	7	<u>강 사</u>	<u>1</u>	<u>1</u>	<u>2</u>	<u>1</u>	<u>2</u>	<u>3</u>	※ 관련 규정명 수정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강사 추가) ※ 시행일 및 강사 관련 사항 적용례 신설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강사 추가 및 비교수정)
연구교육 직명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 교수	3	4	7	4	6	10																																																																									
조 교수	2	2	4	3	4	7																																																																									
연구교육 직명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 교수	3	4	7	4	6	10																																																																									
조 교수	2	2	4	3	4	7																																																																									
<u>강 사</u>	<u>1</u>	<u>1</u>	<u>2</u>	<u>1</u>	<u>2</u>	<u>3</u>																																																																									

박연호
서의태
한진환
홍민규
황강현
최리호
김병혁
윤성호